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28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서영석・남인순・서미화 전진숙・허종식・朴芝源 이수진・소병훈・박용갑 김교흥・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53조).

법률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인”을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 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 지방공소청장----------. ----------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 지방공소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지방공소청장----------.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지방공소청장----------.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 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⑤ ---------- 지방공소청장----------. ----------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 지방공소청장----------. ② (현행과 같음)